



제 553호 2023. 4. 13(목)

입법예고

제2023-1740호	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4817
제2023-1750호	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	34821
제2023-1772호	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4824
제2023-1790호	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	34828

고 시

제2023-102호	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	34840
제2023-105호	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-8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	34842

공 고

제2023-1775호	김해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·공고	34846
제2023-1786호	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6호선)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·공고	34847

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04. 10.

김 해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2. 예고기간 : 2023. 4. 10. ~ 5. 1. (21일간)

3. 개정이유

-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- 자활사업의 활성화,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완화 및 학습의욕 고취,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이 필요함

4. 주요내용

- 자활기금 용도의 구체화(안 제4조제1호 과목)
: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 명시
- 기금 존속기한 연장(부칙 제2조)

5. 의견 제출

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(생활보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2) 제출자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

: (우)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
(전화 : 055-330-4553, 팩스 : 055-722-0199, e메일 : aqua607@korea.kr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e메일, 직접 방문 등

6. 기타
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(☎ 055-330-455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※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찬·반 의견과 그 이유	비 고

○ 기타 참고사항 :

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제출연월일 : 2023. . . .

제 출 자 : 김 해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외에도 시설 및 장비보장 사업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- 자활사업의 활성화,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완화 및 학습의욕 고취,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이 필요함

2. 주요내용

- 자활기금 용도의 구체화(안 제4조제1호 과목)
: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시설 및 장비보장 사업비 지원 명시
- 기금 존속기한 연장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 제26조의2, 제26조의4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부서협의
 - 부패영향분석(감사관)
 - 규제개혁심사(법무담당관)
 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
- 입법예고 : 2023. 4월 ~ (20일 이상)
- 조례·규칙심의회 : 2023. 5월

김해시 조례 제 호

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4조제1호 과목 “컨설팅 지원”을 “컨설팅, 시설 및 장비보장 사업비 지원”으로 한다.

조례 제957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</p> <p>1. 자활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타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파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<u>컨설팅 지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하. (생 략)</p> <p>조례 제957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존속기한)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8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</p> <p>1. 자활사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파. ----- ----- <u>컨설팅,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하. (현행과 같음)</p> <p>조례 제957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존속기한) ----- <u>2028년 8월 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

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김해시장

1. 자치법규명 :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제정이유

가. 대한축구협회 클럽라이센싱 규정 제33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이 아니면 리그 참가 불가
나. 김해FC의 리그 지속적 출전 및 재단법인 김해FC 설립·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나.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라. 재원조성과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마. 공무원 파견, 조직, 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1조)

4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. 5. 3.까지 아래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(참조 : 체육지원과장)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 : 김해시 체육지원과

○ 주 소 : (50924)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동) 김해시청 체육지원과

○ 전 화 : 055-330-2644 (FAX : 055-722-1763)

○ E-mail : ngw6713@korea.kr

붙임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.

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FC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김해FC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「민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김해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 및 운영) ① 김해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.
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김해FC 운영
 2.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
 3. 유소년 축구팀 운영 및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 사업
 4. 지역 사회 공헌활동
 5.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
 6. 구단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
 7.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
 8.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- ② 이사와 감사는 각각 비상근으로 한다.
-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체육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.
- ④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, 당연직 감사는 시의 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.
-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- 제6조(이사회)**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- ② 이사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- 제7조(재원조성 및 재정지원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 2.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등
-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, 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제9조(공무원의 파견)** ①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조직 및 직원 등) 재단의 조직·정원·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11조(사무의 위탁 및 대행)**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의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·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범위는 「김해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2조(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) 시장은 「김해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재단의 장(단장)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김해시 공고 제2023-1772호

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김 해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「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개정이유

- 최근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사전 조치
-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
- 「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지원 사항) 조치에 따라 신체적,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

3. 주요내용

- 공무원증(모바일 공무원증 포함) 사용 등의 근거 개정(안 제10조)
-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(7일 이내)(안 제13조제11항)
- 신체적,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(7일 이내)(안 제13조제12항)

4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(참조 : 총무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1) 주 소 : 우편 50924 /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
(부원동) 김해시청

- 2) 담당부서 : 총무과(총무팀)

(전화:055-330-3073, FAX:055-722-1369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조례개정안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 출 자 : 김 해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사전 조치
-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휴가 신설
- 「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지원 사항) 조치에 따라 신체적,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

2. 주요내용

- 공무원증(모바일 공무원증 포함) 사용 등의 근거 개정(안 제10조)
-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휴가 신설(7일 이내)(안 제13조제11항)
- 신체적,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 (7일 이내)(안 제13조제1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- 예산관련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부서협의
 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: 해당없음
 - 규제사전심사(법무담당관): 해당없음
 -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: 해당없음
- 입법예고:
- 조례·규칙심의회: 2023. . .

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”을 “공무원증(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)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해서는”으로 하고, “따른다”를 “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1항부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⑪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마음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할 증빙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⑫ 민원업무담당에 따라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민원업무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공무원증)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을 따른다.	제10조(공무원증) 공무원증(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)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해서는 ----- -- 준용한다.
제1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생략)	제13조(특별휴가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⑪ 성폭력·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마음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할 증빙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<신 설>	⑫ 민원업무담당에 따라 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민원업무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4. 13.

김 해 시 장

1. 자치법규명

- 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폭넓은 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옥내 누수감면 연1회 제한규정 폐지 및 감면 개월수를 확대하고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소통하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.
- 수도요금 민원서식 개정을 통한 민원신청의 효율성 및 편리성 제고.

3. 주요내용

- 옥내 누수감면 연1회 제한규정 폐지 (안 제23조제3항)
- 감면개월 수 확대 : 2개월에서 최대 3개월 (안 제23조제4항)
- 수도요금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정비 (안 별지 제5호서식, 제7호서식, 제10호서식, 제11호서식)

4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(참조 : 수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1) 주 소 : 우편(50924), 김해시 김해대로 2401, 김해시청(부원동)
- 2) 담당부서 : 김해시 수도과(요금팀)
(전화: 055-330-2813, FAX: 055-333-3525, E-Mail: psh0234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김해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5. 기타

-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수도과 요금팀(☎055-330-28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

2. 성명(단체명/대표자)

주소

3. 의견

4. 기타

「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 :

(전화 :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장 귀하

비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자치법규명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

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
번호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제출자 : 김해시장

1. 제안이유

-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폭넓은 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옥내누수감면 연1회 제한규정 폐지 및 감면 개월수를 확대하고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소통하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.
- 수도요금 민원서식 개정을 통한 민원신청의 효율성 및 편리성 제고.

2. 주요내용

- 옥내 누수감면 연1회 제한규정 폐지 (안 제23조제3항)
- 감면개월 수 확대 : 2개월에서 최대 3개월 (안 제23조제4항)
- 수도요금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정비 (안 별지 제5호서식, 제7호서식, 제10호서식, 제11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수도법」 제38조
 - 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40조
 - 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23조
- 예산관련: 해당없음
- 부서협의
 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: 해당없음
 - 규제사전심사(법무담당관): 해당없음
 - 성별영향평가(여성가족과): 성별 구분 항목 “(남/여)” 신설 의견 반영(안 별지 제5호서식, 제7호서식, 제10호서식, 제11호서식)
- 입법예고:
- 조례·규칙심의회: 2023. 5. . .

김해시 규칙 제 호

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2개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안>

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서(제11조제1항 관련)

신청인 성명 (상호)		전화번호 (휴대폰 번호)	
급수전 소재지			
수 용 가 관리번호	8080-		
급수수용시설물 소 유 자	성 명 : (남/여)	사용자 또는 관 리 자	성 명 : (남/여)
현 행 급수용도	가정용() 일반용() 산업용()	변 경 후 급수용도	가정용() 일반용() 산업용()
변경사유			

위와 같은 사유로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(수용가와의 관계 :)

김해시장 귀하

옥내누수 감면신청서(제23조제3항 관련)

신청인	성명 (상호)		급수전 소재지	
업종			구경(m/m)	
수용기관리번호			전화번호	
월평균 사용량		m ³	옥내 누수량	m ³
누수수리일자			누수수리비용	
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				

위와 같은 사유로 년 월분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별 : 남, 여
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김해시장 귀하

<첨부서류>

- 누수수선공사(전, 중, 후) 사진

옥내누수 감면신청서(제23조제3항 관련)

신청인 성명 (상호)	(남/여)	전화번호 (휴대폰 번호)	
급수전 소재지			
수 용 가 관리번호	8080-		
누수수리 일 자			
누수지점 및 누수발생사유			

제출서류 : 누수수선공사(전,중,후) 사진

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「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제23조 제3항에 따라서 옥내누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(수용가와의 관계 :)

김해시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상수도요금 감면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누수분의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누수공사 사진(전, 중, 후)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기존 감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옥내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 제3항의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에 해당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, 누수 감면 적용은 최대 <u>2개월</u>에 한정한다.</p> <p>⑤ ~ ⑦ (생 략)</p>	<p>제23조(상수도요금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3개월---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김 해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520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사업의 종류 : 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)사업
 - 사업의 명칭 : 선천지구 보도교 개설공사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도시계획결정		금회 시행규모				비고
	길이(m)	폭원(m)	길이(m)	폭원(m)	기정면적(m ²)	변경면적(m ²)	
대로1-1-6	4,477	37	47.7	3.0	358.6	298.7	보도육교 1식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이승용
 - 주 소 :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북로 63
5. 사업기간
 - 기 정 : 2022. 1. 14. ~ 2023. 1. 13.
 - 변 경 : 2022. 1. 14. ~ 2023. 6. 31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: 붙임
7.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사유
 - 보행동선을 고려한 계단부 편입부 변경,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
8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**【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055-330-3594)비치】**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

일련 번호	소재 지	지번	지 목	면 적		토 지 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 고
			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주천 촌목리	1520	도	779.8	95.7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기정
				779.8	61.4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변경
2	주천 촌목리	1362-7	답	2093.0	74.3	경상남도	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				기정
				2093.0	73.8	경상남도	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				변경
3	주천 촌목리	344-8	답	3910.0	102.1	경상남도	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				기정
				3910.0	74.2	경상남도	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				변경
4	주천 촌목리	1434	공	3484.8	58.0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기정
				3484.8	52.2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변경
5	주천 촌목리	1435	도	389.7	28.5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기정
				389.7	34.9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변경
6	주천 촌목리	1521	공	1,122.4	0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기정
				1,122.4	2.2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변경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-8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-8호선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13일

김 해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김해시 삼계동 산120-7번지 일원(변경없음)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사업의 종류 : 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1-8호선)사업
 - 사업의 명칭 : 북부우회도로(대로3-1-8호선) 개설공사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(변경)

시 설 명	도시계획시설		금회 시행규모				비 고
	연장(m)	폭(m)	연장(m)	폭(m)	면적(㎡)		
					기정	변경	
대로3-1-8호선	1,163	25~35	378.4	25~29	13,578	13,577	경고 제1999-39호 (1999.03.04.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성 명 : 김해시장(도로과장)
 - 주 소 :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동 623)
5. 사업시행기간(변경)
 - 기 정 : 2019. 5. 3. ~ 2023. 5. 2.
 - 변 경 : 2019. 5. 3. ~ 2024. 5. 2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(변경) : 붙임
7. 실시계획 변경 사유
 -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
 - 보상협약에 따른 토지소유자 변경 및 보상협약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
8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【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055-330-3595)비치】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
일련 번호	소 재 지	지번	지 목	면 적		토 지 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 고
			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권 리 의 종 류 및 내용	
1	삼계동	820	도	2,681	467	김해시					기정
2	"	832-2	전	955	17	박*수	***				기정
3	"	832-12	전	1	1	김해시					기정
4	"	832-11	전	772	772	김해시					기정
5	"	832	전	239	151	김해시					기정
6	"	산180-1	임	10	10	김해시					기정
7	"	산85-9	임	888	888	김해시					기정
8	"	산180	임	1,484	130	김해시					기정
9	"	833-1	답	48	48	김해시					기정
10	"	834-1	전	332	332	김해시					기정
11	"	833	답	673	120	이*기	경상남도 김해시 율하*로 **, ***동 ****호 (율하동, 율상마을**** *단지)				기정
12	"	산120-16	임	2,421	2,421	김해시					기정
13	"	산120-17	임	645	645	박*대	부산광역시 남구 **동 ***-*				기정
14	"	산120-15	임	207	207	김해시					기정
15	"	산179	임	1,595	193	김*정	부산광역시 강서구 **오션시티 **로 **, ***동 ***호(명지동,** 도시** *차)				기정
16	"	산120-14	임	64	64	김해시					기정
17	"	산179-4	임	1,708	1,708	김해시					기정
18	"	산120-18	임	269	269	엄*섭 김*숙	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**, ***동***호(내동, 경원마을**아파트)				기정
19	"	산120-21	임	2,135	2,135	김해시					기정
20	"	산120-7	임	1,551	32	엄*섭 김*숙	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**, ***동***호(내동, 경원마을**아파 트)				기정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21	삼계동	산120-19	임	64	50	김해시					기정
22	"	734-1	전	11	7	김해시					기정
23	"	733-4	전	31	11	김해시					기정
24	"	1344-184	천	969	174	국토교통부	국				기정
25	"	840-2	천	7	7	김해시					기정
26	"	839-2	천	155	3	박*연	김해시 부원동 ****-**				기정
26	"	839-6	천	3	3	김해시					변경
27	"	840-1	답	112	112	하*준	내동 ****-* 임호마을 **아파트 ***동 ****호				기정
27	"	840-1	답	112	112	김해시					변경
28	"	840-3	답	265	265	김해시					기정
29	"	840-4	천	82	82	김해시					기정
30	"	839-3	답	731	106	박*윤 정*옥 정*옥 정*옥	김해시 경원로 **, ***동 ***호 (내동, 임호마을**아파 트) 김해시 생림대로 ***-* 진주시 사들로 ***, ***동 ***호(충무공동, **도시****아파 트 *단지)				기정
30	"	839-7	답	60	60	김해시					변경
30	"	839-8	답	44	44	김해시					변경
31	"	839	답	605	319	정*옥 정*옥 정*옥	김해시 생림대로 ***-* 진주시 사들로 ***, ***동 ***호(충무공동, **도시****아파 트 *단지)				기정
31	"	839-4	답	320	320	김해시					변경
32	"	1344-183	천	125	109	국	국토교통부				기정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 목	면 적		토 지 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 고
			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권 리 의 종 류 및 내용	
33	삼계동	838-2	도	296	135	경상남도					기정
34	"	1343	도	592	161	국토교통부	국				기정
35	"	850-1	도	5,419	157	경상남도					기정
36	"	850-7	도	84	84	경상남도					기정
37	"	1344-182	천	947	798	국토교통부	국				기정
38	"	731-1	답	63	3	김해시					기정
39	"	730-8	답	275	119	김해시					기정
40	"	841	답	60	45	김해시					기정
41	"	1345-3	도	84	35	국토교통부	국				기정
42	"	725-6	도	318	186	경상남도					기정
합 계 (기정)				29,973	13,578						
합 계 (변경)				28,909	13,577						

김해시 공고 제2023-1775호

김해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 (도시계획과)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04. 13.

김 해 시 장

1. 위 치 : 경남 김해시 화목동 170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김해도시계획(주차장)사업
 - 명 칭 : 화목3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3.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도시계획결정(m ²)	금회 시행규모(m ²)	비고
주차장	2,045	400	김해시 고시 제2016-175호 (2016.06.24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김해시장(교통혁신과장)
 - 주 소 :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동 623)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12개월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

일련 번호	소재 지	지번	지 목	면 적		토 지 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 고
				공부상 면 적	편입 면적	성명 또는 명칭	주 소	성명 명칭	주 소	관 계 종 류 및 내 용	
1	화목동	1703	차	2,045	400	김해시	김해시 김해대로 2401				

7. 실시계획 신청사유
 - 마을공동주차장 확대를 통해 화목3통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
8. 열람기간 :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
9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【김해시청 도시계획과(T.055-330-3594)에 비치】

김해시 공고 제2023-1786호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6호선)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
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6호선)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(도시계획과)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04. 13.

김 해 시 장

- 1. 위 치 : 경남 김해시 관동동 452-9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종 류 : 김해도시계획(도로:중로3-86호선)사업
- 명 칭 :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진입도로(중3-86호선)개설공사
3.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

Table with 6 columns: 시설명, 도시계획시설 (연장, 폭), 공회시행 (연장, 폭, 면적), 비고. Rows include '중로3-86호선' and '대로3-3-6호선'.
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성 명 : 김해시장(도로과장)
- 주 소 : 김해시 김해대로 2401(부원동 623)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

Table with 10 columns: 일련번호,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 (공부, 편입), 토지소유자 (성명, 주소), 관계인 (성명, 주소, 권리종류), 비고. Rows 1 and 2.

- 7. 실시계획 신청사유
-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이용객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 도모
8. 열람기간 :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
9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【김해시청 도시계획과(T.055-330-3594)에 비치】